

목련데이케어센터 관리 · 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8. 29.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567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14. 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
- 나. 상정의결
 -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5. 8. 29.)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생활국장 : 이용달)

가. 제안이유

- 노인성 질환으로 주·야간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설립된 목련데이케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함.
-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목련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어르신 복지 및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이해도가 뛰어나고 전문적인 수행이 가능한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주야간보호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물 관리 일체
- 건강생활 증진사업
- 개인정보처리
- 기타 구청장이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강남구 개포로 617-8, 1층(개포동)
- 시설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2~5등급, 인지지원등급)
- 이용정원 : 21명
- 인력현황 : 11명

(단위: 명)

총인원	센터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운전원
11	1	2	2	5	1

- 운영시간 : (월~금) 08시~21시, (토) 08시~18시
- 시설규모 : 지상 1층 (연면적 173㎡) ※ 공용시설 면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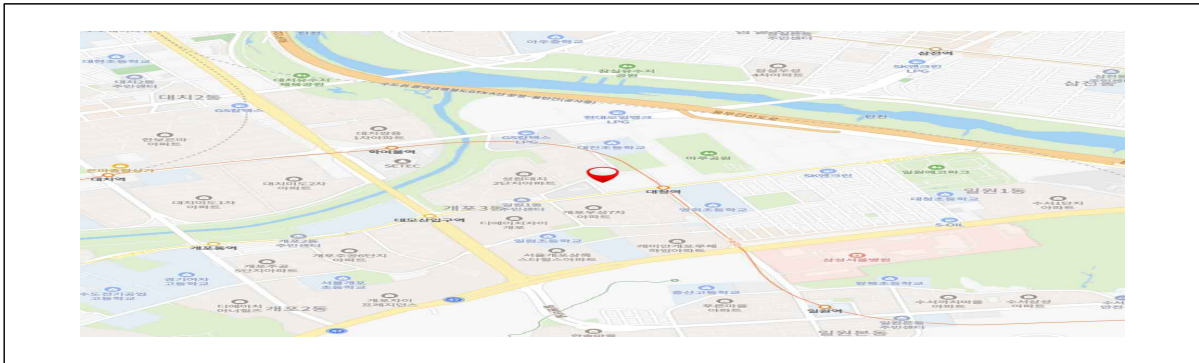
구분	면적(㎡)	주요용도
3층(공용)	198	프로그램실
1층	173	생활실, 사무실, 주방, 화장실, 물리치료실

※ 공용시설 : 강남구 가족센터와 공동으로 사용

- 현장사진



- 위치도



- 민간위탁 기간 : 5년 (2026. 1. 1. ~ 2030. 12. 31.)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관 선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비용 : 별도 구비 위탁금 없음
 -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 수입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 구비로 지급되는 위탁금(운영비, 사업비 등)이 없음

○ 월가계산서

구분		금액(원)	구성비(%)	산출근거	
지출원가	① 인건비(노무비)	기본급	269,565,160	58.3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연장근무수당	21,032,040	4.6	- 근로기준법 제56조
		관리자수당	2,400,000	0.5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관리자 수당지급)
		가족수당	240,000	0.1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기준 적용
		정액급식비	16,080,000	3.5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운전수당	1,200,000	0.3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장기근속수당	2,400,000	0.5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에 관한 고시 제11조 4
	상여금	11,014,572	2.5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보혐료	퇴직충당금	23,383,322	5.1	- 근로기준법 제34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장
		국민건강보험료	11,483,381	2.5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국민연금보험료	14,576,930	3.2	- 국민연금법 제88조
		고용보험료	3,725,215	0.8	- 고용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료	2,137,950	0.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장기요양보험	1,487,095	0.3	-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소 계	380,725,665	82.7		
	② 운영비(경비)	여비(국내/국외)	2,940,000	0.6	- 출장여비에 관한 내부규정
		교육훈련비	1,620,000	0.3	
우편통신비		1,830,000	0.4		
소모품비		1,861,660	0.4		
수선유지비		3,040,000	0.6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차량유지비		10,800,000	2.3		
공공요금 및 제세		15,045,000	3.2		
기타경비		13,850,000	3.0		
소 계	50,986,660	11.1			
③ 사업비	30,940,000	6.7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지출원가 합계(A=①+②+③)	462,652,325	100.0			
수입원가	④ 이용료	313,167,607	70	- 2025년 장기요양수가 반영	
	⑤ 사용료	0	0	- 노인복지법 제44조에 의거 무상 사용	
	⑥ 기타수입	134,590,500	30	-	
수입원가 합계(B=④+⑤+⑥)	447,758,107	100.0	시(市) 보조금 제외		
위탁비용(A-B)	※ 민간위탁비용 없음(시 보조금 포함 시 실질적 수입원가가 지출원가 초과) ※ 2024년도 서울형 인증 데이케어센터 보조금액: 50,000천원 (시비 재배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 2. 위탁계약기간
 -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의회 동의는 신규, 재위탁 및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재계약 하는 경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I. 동의안 제출 배경

- 본 동의안은 목련데이케어센터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

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 동의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며, 현재 운영 법인과 협약 기간은 2025. 12. 31.까지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동의안의 형식 및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조례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동의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조례상의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 보임.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제출됨.

II. 주요사항의 검토

- 금번 재위탁 대상 시설인 목련데이케어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주·야간 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 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1999년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음.
-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주야간보호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물 관리 일체, ▶건강생활 증진사업, ▶개인정보처리, ▶기타 구청장이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임. 위탁계약기간은 5년(2026. 1. 1. ~2030. 12. 31.)으로 제출되었으며, 위탁 및 위탁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한편,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성과평가)에 따라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목련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는 2025. 6. 12. 관련 평가가 있었고, 평가 결과 87점으로 기준 점수 75점 이상 ‘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참고로, 목련데이케어센터 회계점검 결과 아래와 같은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여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III. 종합의견

- 우리사회는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노인 돌봄은 사회적 과제이자 필수적 복지서비스가 되었음.
- 특히 데이케어센터는 주·야간 시간 동안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을 돌보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고립 방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바,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 공공성,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 됨.
- 다만, 장기간 동일 법인에서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 효율성과 경쟁력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 함에 있어 수탁자의 시설 운영 능력과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 운영을 위해 부서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목련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끝.

목련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67
----------	-----

제출년월일: 2025. 8. 14.

제출자: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어르신복지과

1. 제안이유

가. 노인성 질환으로 주·야간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설립된 목련데이케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함.

나.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목련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필요성

- 어르신 복지 및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이해도가 뛰어나고 전문적인 수행이 가능한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주야간보호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물 관리 일체
- 건강생활 증진사업
- 개인정보처리
- 기타 구청장이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강남구 개포로 617-8, 1층(개포동)
- 시설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2~5등급, 인지지원등급)
- 이용정원 : 21명
- 인력현황 : 11명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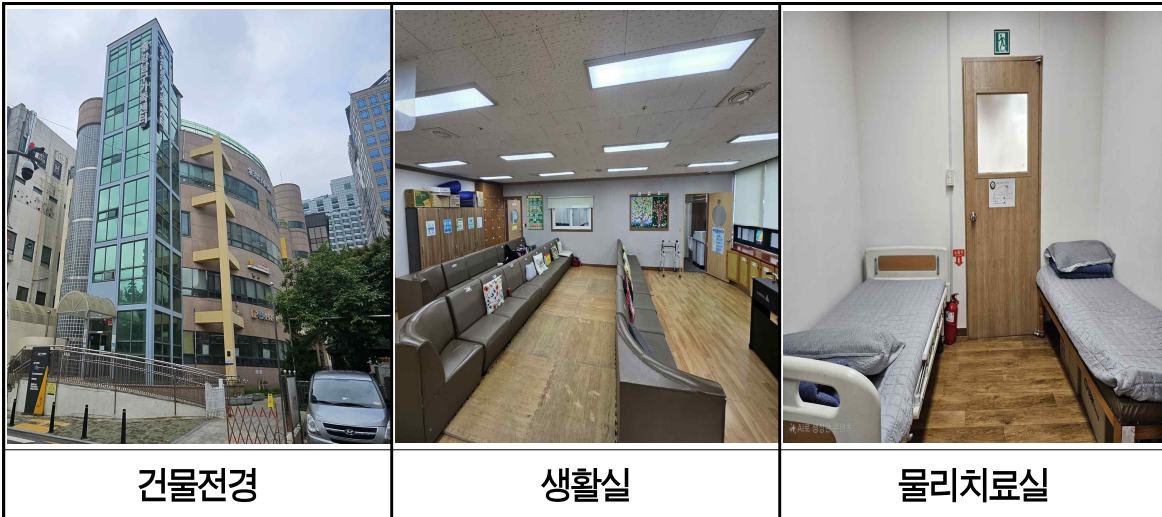
총인원	센터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운전원
11	1	2	2	5	1

- 운영시간 : (월~금) 08시~21시, (토) 08시~18시
- 시설규모 : 지상 1층 (연면적 173m²) ※ 공용시설 면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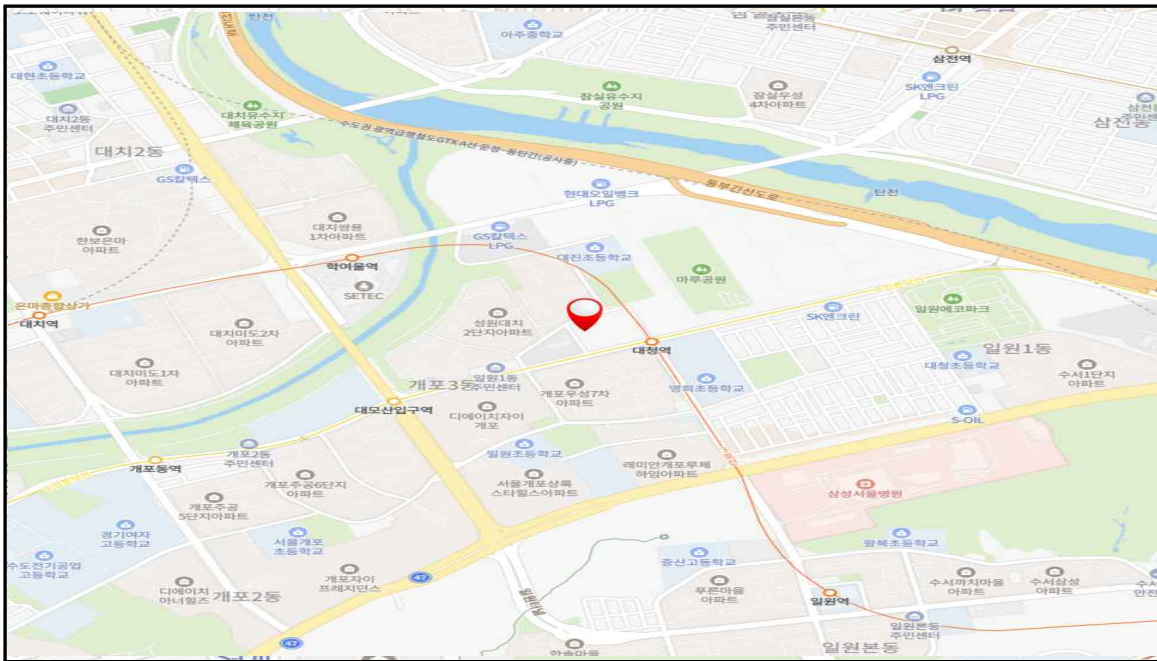
구분	면적(m ²)	주요용도
3층(공용)	198	프로그램실
1층	173	생활실, 사무실, 주방, 화장실, 물리치료실

※ 공용시설 : 강남구 가족센터와 공동으로 사용

○ 현장사진



○ 위 치 도



마. 민간위탁기간 : 5년 (2026. 1. 1. ~ 2030. 12. 31.)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관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비용 : 별도 구비 위탁금 없음

-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 수입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 구비로 지급되는 위탁금(운영비, 사업비 등)이 없음

○ 원가계산서

구분		금액(원)	구성비(%)	산출근거	
지출원가	① 인건비 ~ 노무비	기본급	269,565,160	58.3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연장근무수당	21,032,040	4.6	- 근로기준법 제56조
		관리자수당	2,400,000	0.5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관리자 수당지급)
		가족수당	240,000	0.1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 기준 적용
		정액급식비	16,080,000	3.5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운전수당	1,200,000	0.3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장기근속수당	2,400,000	0.5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고시 제11조 4
		상여금	11,014,572	2.5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퇴직충당금	23,383,322	5.1	- 근로기준법 제34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장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11,483,381	2.5
	국민연금보험료		14,576,930	3.2	- 국민연금법 제88조
	고용보험료		3,725,215	0.8	- 고용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료		2,137,950	0.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장기요양보험		1,487,095	0.3	-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소 계		380,725,665	82.7	
	② 운영비 ~ 경비	여비(국내/국외)	2,940,000	0.6	- 출장여비에 관한 내부규정
		교육훈련비	1,620,000	0.3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우편통신비	1,830,000	0.4	
		소모품비	1,861,660	0.4	
		수선유지비	3,040,000	0.6	
차량유지비		10,800,000	2.3		
공공요금 및 체세		15,045,000	3.2		
기타경비		13,850,000	3.0		
소 계	50,986,660	11.1			
③ 사업비	30,940,000	6.7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지출원가 합계(A=①+②+③)		462,652,325	100.0		
수입원가	④ 이용료	313,167,607	70	- 2025년 장기요양수가 반영	
	⑤ 사용료	0	0	- 노인복지법 제54조에 의거 무상 사용	
	⑥ 기타수입	134,590,500	30	-	
수입원가 합계(B=④+⑤+⑥)		447,758,107	100.0	시(市) 보조금 제외	
위탁비용(A-B)		※ 민간위탁비용 없음(시 보조금 포함 시 실질적 수입원가가 지출원가 초과) ※ 2024년도 서울형 인증 데이케어센터 보조금액: 50,000천원 (시비 재배정)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 2. 위탁계약기간
 -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

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의회 동의는 신규, 재위탁 및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재계약 하는 경우

※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재가복지팀 행정8급 주민지(☎ 02-3423-5924)

비목별 기초계산서

1. 인건비 (노무비)

가. 기본급

(단위 : 원)

운영인력			근무기간		기준단가 (월 임금) ④	소요금액 ⑤=③×④
직 종	담당과업	종사인원 ③	개월수 ②	누계 ①=②×③		
센터장 (3급 9호봉)	데이케어센터 운영총괄	1	10	10	3,461,830	34,618,300
			2	2	3,562,770	7,125,540
팀장 (4급 14호봉)	회계 및 수가신청 프로그램 관리 등	1	12	12	3,466,980	41,603,760
사회복지사 (5급 1호봉)	외부공문관리, 송영 이용계획서, 사례관리	1	12	12	2,505,990	30,071,880
간호조무사	(주)어르신 건강관리	1	12	12	2,142,000	25,704,000
	(야)어르신 건강관리	1	12	12	1,127,100	13,525,200
요양보호사	(주)어르신 케어	1	12	12	2,169,540	26,034,480
		1	12	12	2,158,320	25,899,840
		1	12	12	2,137,920	25,655,040
	(야)어르신 케어	1	12	12	1,075,080	12,900,960
		1	12	12	1,075,080	12,900,960
운전원	차량운전및관리	1	12	12	1,127,100	13,525,200
계		11	-	-	-	269,565,160
운영인력 배지치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직급, 호봉) -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 센터장, 팀장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2025년 인건비 대비 3% 인상을 반영)
- * 사회복지사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5급 1호봉 기준
- *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운전원 : 급여기준 내부규정 (2025년 최저임금 대비 2% 인상을 반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배치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구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주·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차매 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1명 (이용자 25명 이상)	1명	1명

나. 제수당

(1) 연장근무수당

(단위 : 원)

직 종	연장근무사유	근무인원 ①	근무기간			기준단가 (시간당) ⑤	소요금액 ⑥=④×⑤
			시간(1일당) ②	근무일수 ③	소계 ④=①×②×③		
팀장	업무처리	1	3	60	180	28,300	5,094,000
사회복지사	업무처리	1	3	60	180	19,030	3,425,400
간호조무사 (주간)	토요근무	1	8	12	96	16,410	1,575,360
간호조무사 (야간)	토요근무	1	8	12	96	18,260	1,752,960
요양보호사 (주간)	토요근무	1	8	12	96	16,610	1,594,560
요양보호사 (주간)	토요근무	1	8	12	96	16,530	1,586,880
요양보호사 (주간)	토요근무	1	8	12	96	18,380	1,764,480
요양보호사 (야간)	토요근무	1	8	12	96	17,510	1,680,960
요양보호사 (야간)	토요근무	1	8	12	96	17,510	1,680,960
운전원(야간)	대직근무	1	4	12	48	18,260	876,480
계	-	10	-	-	-	-	21,032,040

* 기준단가 계산식

- 주간 근무자 : (통상임금 /209)*1.5*근무시간
- 야간 근무자 : (통상임금/104.5)*1.5*근무시간

(2) 야간근무수당 : 해당없음

(3) 휴일근무수당 : 해당없음

(4) 연차수당 : 해당없음

(5) 관리자수당

(단위: 원)

직 종	지급대상인원	지급횟수	기준단가 (1인당)	소요금액
센터장(3급)	1	12	200,000	2,400,000
계	1	-	-	2,400,000

* 기준단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자수당 지급기준

(6) 가족수당

(단위: 원)

직 종	지급대상인원	지급횟수	기준단가 (1인당)	소요금액
센터장(3급)	1	12	20,000	240,000
계	1	-	-	240,000

* 기준단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기준

(7) 정액급식비

(단위: 원)

직 종	지급대상인원	지급횟수	기준단가 (1인당)	소요금액
시설장	1	12	130,000	1,560,000
팀장	1	12	130,000	1,560,000
사회복지사	1	12	120,000	1,440,000
간호조무사	2	12	120,000	2,880,000
요양보호사	5	12	120,000	7,200,000
운전원	1	12	120,000	1,440,000
계	11	-	-	16,080,000

- * 센터장, 팀장 기준단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정액급식비 130,000원)
-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운전원 기준단가 : 급여기준 내부규정(급식비 120,000원)

(8) 운전수당

(단위: 원)

직 종	지급대상인원	지급횟수	기준단가 (1인당)	소요금액
간호조무사	1	12	50,000	600,000
요양보호사	1	12	50,000	600,000
계	2	-	-	1,200,000

- * 급여기준 내부규정에 따라 인건비 수당 가운데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에게 운전 수당 지급

(9) 장기근속수당

(단위: 원)

직 종	지급대상인원	지급횟수	기준단가 (1인당)	소요금액
요양보호사	2	12	100,000	2,400,000
계	2	-	-	2,400,000

- * 장기근속장려금에 의거 어르신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
- * 84개월 이상의 근속기간 자에게는 장기근속장려금 100,000원 지급

다. 상여금

(단위 : 원)

직 종	지급대상 인원	지급횟수	기준단가	지급률 (연간)	소요금액
센터장	1	2회	2,077,098	100%	4,154,196
팀장	1	2회	2,080,188	100%	4,160,376
사회복지사	1	2회	150,000	100%	300,000
사회복지사	2	2회	150,000	100%	600,000
요양보호사	5	2회	150,000	100%	1,500,000
운전원	1	2회	150,000	100%	300,000
계	11	-	-	-	11,014,572

라. 퇴직충당금

(단위 : 원)

직 종	지급대상인원	월 기본노임	월 상여금	기준단가 (1인당)	소요금액
센터장	1	3,461,830(10월)	346,183	3,808,013	3,173,340
		3,562,770(2월)		3,919,047	653,174
팀장	1	3,466,980	346,698	3,813,678	3,813,678
사회복지사	1	2,505,990	25,000	2,530,990	2,530,990
간호조무사 (주간)	1	2,142,000	25,000	2,167,000	2,167,000
간호조무사 (야간)	1	1,127,100	25,000	1,152,100	1,152,100
요양보호사 (주간)	1	2,169,540	25,000	2,194,540	2,194,540
요양보호사 (주간)	1	2,158,320	25,000	2,183,320	2,183,320
요양보호사 (주간)	1	2,137,920	25,000	2,162,920	2,162,920
요양보호사 (야간)	1	1,075,080	25,000	1,100,080	1,100,080
요양보호사 (야간)	1	1,075,080	25,000	1,100,080	1,100,080
운전원	1	1,127,100	25,000	1,152,100	1,152,100
계	11	-	-	-	23,383,322

마. 사회보험료

(단위 : 원)

구 분	산출기준 ㉠	공시요율 ㉡ (사업주부담, 2025년 기준)	금 액 ㉢=㉠×㉡
국민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본급+제수당+상여금+ 급여성 임금)	3.545%	11,483,381
국민연금보험료		4.5%	14,576,930
산재보험료		· 신규사업 : 사업별 고시요율 · 계속사업 : 납부요율	2,137,950
고용보험료		1.15%~1.75% (종사인원, 기업별)	3,725,215
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12.95%	1,487,095
계	-	-	33,410,571

2. 운영비(경비)

가. 여 비

(1) 국내여비

(단위 : 원)

직 종	출장목적	출장인원 ①	출장횟수 ②	기준단가(1회당)		소요금액 ④=①×②×③
				산출식	단가 ③	
전직종	교육 및 연수 참석	11	2	20,000*11명*2회	20,000	440,000
계	-	11	2	-	-	440,000

* 기준단가는 1회당 숙박비, 일비, 식비, 운임비 등 산출하여 계상

(2) 국외여비

- 출장내역

일 자	활 동 사 항	비 고
미정	해외연수	

- 소요금액 : 2,500,000원

(단위 : 원)

직 종	인원수 ①	기준단가 (1회/1인당)					소요금액 ③=①×②
		소계 ②	항 공 료 (실비계산)	일 비 (일수×단가)	숙 박 비 (박수×단가)	식 비 (일수×단가)	
전직종	1	2,500,000	총 연수비용 2,500,000원 범위 내 지원 (나머지는 개인 부담으로 처리)				2,500,000
계	1	-	-				2,500,000

나. 교육훈련비

(단위 : 원)

구분 (교육명칭)	교육목적	횟수 ㉠	인원 ㉡	교육여비(1회당)		소요금액 ㉣=㉠×㉡×㉣
				산출식	단가 ㉣	
보수교육	업무역량 강화	1	11	50,000*11명	50,000	550,000
외부교육	직무능력 향상 (개별교육)	1	11	70,000*11명	70,000	770,000
내부교육	직무능력 향상 (집합교육)	1	1	300,000*1회	300,000	300,000
계	-	3	23	-	-	1,620,000

다. 임차료 : 해당없음

라. 우편 통신비

(1) 우편료

(단위 : 원)

우편종류	발송목적	발송건수	기준단가 (1건당)	소요금액
일반우편	우편물 발송	5	1,000	5,000
등기소포	서류 발송	5	5,000	25,000
계	-	10	-	30,000

(2) 전화·통신료

(단위 : 원)

구분	사용목적	사용수량			기준단가 (1건당)	소요금액
		통/월	월수	소계		
전화·인터넷요금	기관 업무 진행	-	12	-	65,000	780,000
휴대폰 요금	기관 업무 진행	-	12	-	75,000	900,000
팩스 요금	기관 업무 진행	-	12	-	10,000	120,000
계	-	-	-	-	-	1,800,000

마. 유인물비 : 해당없음

바. 소모품비(피복비 등)

(단위 :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 출 가 격	
				조사1	조사2	조사3	최저단가	금 액
복사용지	A4용지 2,500매	개	30	22,000	22,960	25,920	22,000	660,000
정부과일	10개입	개	10	2,780	3,910	4,100	2,780	27,800
라벨지	A4 100매	개	5	13,220	13,680	13,710	13,220	66,100
물티슈	100매 10개	박스	12	12,000	15,370	16,230	12,000	144,000
화장지	30롤 2개	개	10	25,600	27,400	30,190	25,600	256,000
위생장갑	400매	개	25	6,680	7,335	8,170	6,680	167,000
위생백	500매 중형	개	10	5,570	6,320	7,830	5,570	55,700
세탁세제	10kg	개	6	7,250	11,750	13,535	7,250	43,500
주방세제	1.4L	개	15	2,820	3,080	3,163	2,820	42,300
칫솔	10개	개	21	5,720	7,900	7,970	5,720	120,120
치약	10개	개	3	9,600	12,000	14,630	9,600	28,800
수건	10개	개	3	20,900	24,900	25,900	20,900	62,700
재활용비닐	5L 200매	개	6	2,770	3,530	3,700	2,770	16,620
비누	12개	개	3	9,180	10,690	11,690	9,180	27,540
손소독제	500ml 12개	개	2	71,740	87,500	99,200	71,740	143,480
계	-	-	-	-	-	-	-	1,861,660

사. 기타 경비

(단위 : 원)

구 분	항 목	산 출 내 역		기본단가 ②	금 액 ③=①×②	관련근거
		산출식	수량 ①			
수선유지비	소방안전점검	80,000*2회	2	80,000	160,000	
	경비용역	140,000*12회	12	140,000	1,680,000	
	시설장비유지	100,000*12회	12	100,000	1,200,000	
	소 계	-	-	-	3,040,000	
차량유지비	유류대	80,000*90회	90	80,000	7,200,000	
	차량 정비 및 소모품	300,000*12회	12	300,000	3,600,000	
	소 계	-	-	-	10,8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	300,000*12회	12	300,000	3,600,000	
	지역난방	300,000*12회	12	300,000	3,600,000	
	상하수도료	200,000*6회	6	200,000	1,200,000	
	자동차세	70,000*2회	2	70,000	140,000	
	환경개선부담금	110,000*4회	4	110,000	440,000	
	자동차보험	1,000,000*2대	2	1,000,000	2,000,000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1,500,000*1회	1	1,500,000	1,500,000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20,000*1회	1	20,000	20,000	
	신원보증보험	200,000*1회	1	200,000	200,000	한국사회복지 공제회
	직원상해공제보험	15,000*11명	11	15,000	165,000	한국사회복지 공제회
	협회비	180,000*4회	4	180,000	720,000	서울시제가노 인복지협회
	도시가스	30,000*12회	12	30,000	360,000	
	건물화재보험	100,000*1회	1	100,000	100,000	
	기타	1,000,000*1회	1	1,000,000	1,000,000	
소 계	-	-	-	15,045,000		

구 분	항 목	산 출 내 역		기본단가 ㉑	금 액 ㉒=㉑×㉓	관련근거
		산출식	수량 ㉓			
기타 경비	방역소독비	70,000*12회	12	70,000	840,000	
	청소용역비	330,000*12회	12	330,000	3,960,000	
	점보를 및 방향제	110,000*12회	12	110,000	1,320,000	
	재활용품·폐기물처리	20,000*12회	12	20,000	240,000	
	컴퓨터 유지보수	20,000*12회	12	20,000	240,000	
	복합기 렌탈료	120,000*12회	12	120,000	1,440,000	
	정수기 렌탈료	20,000*12회	12	20,000	240,000	
	비데 렌탈료	40,000*12회	12	40,000	480,000	
	공기청정기 렌탈료	40,000*12회	12	40,000	480,000	
	CCTV 사용료	55,000*12회	12	55,000	660,000	
	공인회계사감사 수수료	550,000*1회	1	550,000	550,000	
	퇴직연금 수수료	1,000,000*1회	1	1,000,000	1,000,000	
	운영위원수당	70,000*5명*4회	4	350,000	1,400,000	
	기타 경비	1,000,000*1회	1	1,000,000	1,000,000	
	소 계	-	-	-	13,850,000	
합 계	-	-	-	42,735,000		

3. 사업비

(단위 : 원)

구 분	항 목	산 출 내 역	소요금액
사회재활사업	미술인지 강사료	55,000*52주	2,860,000
	도예교실 강사료	55,000*52주	2,860,000
	종이접기 강사료	45,000*52주	2,340,000
	나이트쿠킹테라피	100,000*12월	1,200,000
	요리교실	60,000*52주	3,120,000
	프로그램 재료비	200,000*12월	2,400,000
	소 계	-	14,780,000
정서지원사업비	음악치료 강사료	55,000*52주	2,860,000
	웃음치료 강사료	50,000*52주	2,600,000
	프로그램 재료비	100,000*12월	1,200,000
	소 계	-	6,660,000
의료재활사업비	약품구입비	100,000*4분기	400,000
	비상약구입비	100,000*4분기	400,000
	긴급병원 진료비	100,000*12월	1,200,000
	소 계	-	2,000,000
특별사업비	생신잔치	100,000*12월	1,200,000
	어버이날행사	600,000*1회	600,000
	명절행사(설, 추석)	500,000*2회	1,000,000
	송년잔치	600,000*1회	600,000
	야외나들이	700,000*2회	1,400,000
	소 계	-	4,800,000
사례관리비	사례관리비	25,000*4월	100,000
	소 계	-	100,000
가족지원 사업비	가족간담회	300,000*2회	600,000
	소 계	-	600,000
교육 및 홍보사업비	대내외홍보비	250,000*4분기	1,000,000
	소 계	-	1,000,000
지역연계사업비	자원봉사자 관리비	10,000*5명*12월	600,000
	자원봉사자 명절비	50,000*2명*2회	200,000
	지역사회연계 및 협약비용	100,000*2회	200,000
	소 계	-	1,000,000
합 계		-	30,940,000

4. 이용료

(단위 : 원)

항목	단가	수량 (월 인원)	기간 (월)	수입액	비고 (징수근거)
이용료(평일)	69,160	1	247일*95%	16,228,394	2025년 장기요양수가
이용료(평일)	62,780	4	247일*95%	58,925,308	
이용료(평일)	63,900	2	247일*95%	29,988,270	
이용료(평일)	57,960	3	247일*95%	40,800,942	
이용료(평일)	62,290	5	247일*95%	73,056,595	
이용료(평일)	56,380	6	247일*95%	79,377,402	
이용료(주말)	57,960	3	23일*95%	3,799,278	
이용료(주말)	56,380	6	23일*95%	7,391,418	
이동서비스	300,000	-	12월	3,600,000	
계	-	-	-	313,167,607	

* 기간 산출 기준 : 운영일수 × 이용어르신 출석률 95%

5. 사용료 - 해당사항 없음(노인복지법 제54조에 의거 무상 사용)

6. 기타수입

(단위: 원)

항목	단가	수량 (월 인원)	기간 (월)	수입액	비고
식사 재료비 (평일 주간)	4,500	21	247일	23,341,500	
식사 재료비 (평일 야간)	4,500	11	247일	12,226,500	
식사 재료비 (토요일)	4,500	9	23일	931,500	
간식 재료비 (평일)	1,500	21	247일	7,780,500	
간식 재료비 (토요일)	1,500	9	23일	310,500	
장기요양 가산금 (프로그램 및 인력가산)	7,500,000	-	12월	90,000,000	
계	-	-	-	134,590,500	